

##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 12.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4. 29

다. 상 정 일 자 : 2003. 4. 29

(제109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제113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환경과장 임 영 태

나. 개정사유

- 현행 급수구역내의 고압이 원활하고 흡수정 이하의 설계 및 대행이 불필요하게 되어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키로 심의 의견함.

다. 주요내용

- 흡수정 이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의 설계 및 시공대행 폐지 (안 제14조제2항)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도 화순군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의 설계 및 시공대행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 흡수정 이하의 설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케 할 수 있다함은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 사항으로 규제나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며, 화순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한다면,
- 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 수도시설설치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절수 설비의 설치 대상 등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된 범위를 정하여 주민편익에 앞장서야 함에도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무의미한 조문 삭제 등으로 행정규제 완화 실적올리기 등을 위해 본 의회의 의견을 요하는 회의를 소집케하는 일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 보 의 결

7. 첨 부 :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1차 본회의

제2차 본회의

제3차 본회의

제4차 본회의

제5차 본회의

제6차 본회의

제7차 본회의

제8차 본회의

제9차 본회의

제10차 본회의

제11차 본회의

제12차 본회의

제13차 본회의

제14차 본회의

제15차 본회의

제16차 본회의

제17차 본회의

제18차 본회의

제19차 본회의

제20차 본회의

제21차 본회의

제22차 본회의

제23차 본회의

##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① (생략)</p> <p>②흡수정이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u>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u></p>	<p>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